

GANGJIN 

Web Contents




목차

목차	2
민원서식	3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	3
첨부파일(1)	3

[민원사무처리](#)[민원서식](#)

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

작성일 2020.09.15 10:45 등록자 한설희 조회수 217

첨부파일(1)  10_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 신고.hwp 98 hit/ 24.5 KB [다운로드](#) [미리보기](#)

1. 사무안내

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·설치·운영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

2. 신청대상자: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려는 자

3. 신청방법: 방문

4. 관련법규

- 식품위생법 제88조
-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, 제94조제2항

5. 수수료: 28,000원 /종료 후 재신고(기존 집단급식소 다시 운영) 수수료 없음

6. 구비서류: 교육 이수증 외(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)

- 위생교육필증 1부
- 건강진단결과서 1부
-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(LPG사용하는 경우에 한함)
-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(시험)성적서 1부
(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·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)
- 양도·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·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

7. 처리기간 및 제출처: 즉시(3시간 이내)/ 민원봉사과(☎430-3425)

[목록](#)

GANGJIN

Web Contents

